##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705

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위성곤·민병덕·허 영

김성환 · 이건태 · 전재수

박희승 • 이재관 • 조인철

박정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, 세액감면 및 징수·부과 절차 등에 관해 「지방세법」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·세액감면을 가감조정하거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.

한편 「지방세법」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 상,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분리과세대상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토지보다 저율(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 등) 또는 고율(골프장용 토지 등)을 적용하고 있는데, 대통령령에 위임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하는 특례규정이 없음.

그런데 2022. 1. 1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

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,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었음.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역사적·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'지역경제의 발전,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'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3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3조의2(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특례) 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1항 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23조의2(과세대상의 구분에
	관한 특례) 「지방세법」 제10
	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
	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
	조례로 정할 수 있다.